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삼지공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16.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이경숙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 하여 3월 5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조성·관리, 참여지원 규정 (안 제4조~제6조)
- 다. 관리 우수 쌈지공원 선정, 쌈지공원 평가단 규정 (안 제7조~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공원조성과
- 라. 입법예고 : 2026. 3. 5. ~ 3. 10.(5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남양주시 생활권 내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녹지 및 휴식공간인 쌈지공원을 조성·관리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도시 내 유희지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조성은 생활권 녹지 확충과 도시환경 개선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남양주시 쌈지공원 지원 조례안」 제4조제1항에 따른 쌈지공원 조성 및 동 조 제6조 및 9조에 따른 관리참여자에게 경비 지원과 평가단 회의 수당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및 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우리시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 쌈지공원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되어 반복적·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

〈5년간 사업내역 : 쌈지공원 조성사업〉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00,000	80,000	100,000	150,000	100,000
도비(30%)	30,000	24,000	30,000	45,000	30,000
시비(70%)	70,000	56,000	70,000	105,000	70,000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추가 조성될 신규사업의 대상지·규모·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제6조 쌈지공원 관리참여자에 대하여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전이므로 예상되는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제9조 평가단 회의에 참여한 위촉직 단원 수당 및 여비 지급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 위촉직 6명 × 100,000원 × 연 2회 : 1,200,000원

4. 작성자

환경국 공원조성과장 김준모